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45
----------	-------

발의연월일 : 2025. 12. 9.

발 의 자 : 박수민 · 김선교 · 강대식
성일종 · 임이자 · 임종득
김소희 · 김미애 · 구자근
곽규택 · 박성민 · 이양수
강명구 · 조정훈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비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를 “공공주택의 공급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
2. 다자녀 가구
3. 공공주택 입주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생략)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u>주거지원 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u>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u>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 <u>공공주택의 공급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 -. ----- <u>해당</u> ----- ----- -----.
<신 설>	1. <u>주거지원필요계층</u>
<신 설>	2. <u>다자녀 가구</u>
<신 설>	3. <u>공공주택 입주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한 자</u>